

뉴욕주 주민투표안

11 월 4 일 여러분은 뉴욕주 헌법 개정을 위한 세 가지 주민투표안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각 주민투표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투표안은 질문지의 공식적인 문구로 시작되어 그 다음에는 투표안이 통과되었을 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거재정위원회가 준비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선거재정위원회는 다양한 언론보도 및 논평에 의거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또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주민 개개인들에게 자신이 각 투표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자가 제출한 내용 그대로 담았습니다.) 본 안내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각 주민투표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이유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각 주민투표안의 본문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elections.ny.gov/ProposedConsAmendments2.html>.

| | |
|-----------------------------------|-------|
| 주민투표안 1번 뉴욕주 선거구획정 절차 개정..... | 페이지 1 |
| 주민투표안 2번 뉴욕주 입법안 전자 전송 허용 | 페이지 5 |
| 주민투표안 3번 2014년 스마트 학교 채권법 | 페이지 6 |

주민투표안 1 번 | 뉴욕주 선거구획정 절차 개정

이 주민투표안은 뉴욕주 헌법 제 3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을 개정하고 새로 제 5-b 항을 추가하여 뉴욕주 의회 및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 절차를 변경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4 명의 의회 지도자들이 각각 임명한 2 명의 위원들과 이 8 명의 위원들에 의해 선출된 2 명의 위원으로 2020 년부터 매 10 년마다 선거구획정 위원회를 설립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주의원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획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며; 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한 주의회의 결의를 의무화하되; 의회에서 획정안이 두 번 부결되면 확립된 원칙에 따라 의회가 획정안을 개정하게 하고;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보장하며; 위원회 제정 및 소속 직원을 지원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이 개정안은 매 10 년마다 시행되는 뉴욕주 상원, 뉴욕주 하원 그리고 미국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수정할 것입니다. 현체제에 의하면, 뉴욕주 의회의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가

전담위원회를 이를 6 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이 위원회가 의회와 협의해 선거구 획정 초안을 마련한 다음, 이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총 10 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설립될 것입니다. 이 중 8 명은 뉴욕주 의회 지도자들이 임명하고, 또 이 8 명이 나머지 위원 2 명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획정 초안을 세우고,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승인을 위해 이를 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위원 임명, 자격 및 소속 직원

뉴욕주 상원의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와 하원의 다수당 원내대표가 각각 위원을 2 명씩 임명하고, 이 8 명이 나머지 위원 2 명을 임명할 것입니다. 이 추가 위원 2 명은 지난 5 년간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적(籍)을 두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위원회는 뉴욕주 주민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며, 위원은 외부 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되어야 합니다. 모든 위원은 뉴욕주 등록 유권자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현재 또는 지난 3 년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 뉴욕주 의회 및 연방 하원 의원이거나 뉴욕주 전체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인 경우
- 뉴욕주 등록 로비스트인 경우
- 뉴욕주 정부 소속 공직자이거나 공무원인 경우
- 뉴욕주 의회 직원인 경우
- 정치정당 의장인 경우

뉴욕주 전체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무원,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주의회 의원의 배우자 또한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2 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중 1 명은 주에서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을 대표할 것이며, 다른 1 명은 두 번째로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을 대표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함께 공동위원장 2 명이 세운 인사계획을 검토할 것입니다.

획정안 수립

선거구 획정은 연방 및 주 헌법에 부합하고 연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꼭 따라야 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구 획정이 인종적 및 언어적 소수자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특정 집단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약화하려는 의도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되며,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선거구는 같은 인구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모든 선거구는 지리적 일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선거구의 모든 지점이 다른 지점과 연결되어 있어 뚝 떨어진 지역이 없어야 하며, 원형이나 육각형처럼 조밀한 형태를 띠어야 한다.
- 경쟁을 제한하거나 재임자, 특정 후보, 또는 특정 정당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된다.
- 현재 존재하는 선거구 의 핵심 지역, 기존의 정치적 내부 지역 및 이익 집단들의 보존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획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획정위원회는 뉴욕주 전역에 걸쳐 공청회를 최소한 12 번 개최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청회 일정을 주민들에게 통보해야 하며, 주민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첫 공청회 전에 획정 초안과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안을 주 의회에 제출할 때 공청회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획정안 승인 및 위원회 소속 직원 임명

이 개정안은 또한 위원회가 획정안을 표결하거나 고위 직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 주 의회가 획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규정을 확립합니다. 이 규정은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같을 시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회를 구성하는 10 명 중 과반수의 찬성 필요. 의회 지도자 4 명이 각각 임명한 2 명의 위원 중 최소한 1 명씩이 찬성표결을 해야 함. 이 요구사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도자들이 임명한 위원들이 공동위원장 한 명을, 또 상원 하원 소수당 지도자들이 임명한 위원들이 다른 공동위원장 한 명을 임명한다.
- 위원회 획정안 승인: 위원 10 명 중 최소한 7 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중 의회 지도자 4 명이 각각 임명한 2 명의 의원 중 1 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의회의 획정안 승인: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함.

뉴욕주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를 시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회를 구성하는 10 명 중 과반수의 찬성 필요. 의회 지도자 4 명이 각각 임명한 2 명의 위원 중 최소한 1 명씩이 찬성표결을 해야 함. 이 요구사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상원 다수당 지도자가 임명한 위원들이 공동위원장 한 명을, 또 하원 다수당 지도자가 임명한 위원들이 다른 공동위원장 한 명을 임명한다. 이와 더불어 상·하원 소수당 지도자들이 임명한 위원들이 부공동위원장을 한 명씩 선출한다.
- 위원회 확정안 승인: 위원 10 명 중 최소한 7 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중 의회 지도자 4 명이 각각 임명한 2 명의 의원 중 1 명이 있어야 함.
- 위원회 표결을 통과한 확정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함.
- 위원회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확정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적어도 6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함.

의원화가 법정 기한까지 확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내부적으로 찬성표를 가장 많이 획득한 확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제출한 두 개의 확정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또는 일차적으로 의회를 통과했지만,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로 환부된 다음 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확정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확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마지막 승인을 위해 주지사에게 보내집니다.

YES 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개정안이 수립하는 위원회는 주 및 연방 의원들, 의원 보좌관들 및 등록된 로비스트들이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기존 선거구획정 방식보다 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질 것입니다.
- 이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하여금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선거구획정을 조작하는 행위를 억제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인종적 및 언어적 소수자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약화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고; 재임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서도 안 되며; 기존 선거구의 핵심 지역, 내부 지역 간의 정치적 차이, 이익 집단들의 구조를 고려해야 하고; 지리적 일체성을 갖춘 조밀한 형태의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비하여 확정안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위원회 소속 고위 직원을 임명하고 확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력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 이 개정안의 내용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립된다면 확정 과정에서 당파성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당과 소수당 소속 위원의 수가 같고 두 개의 주요 당인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속하지 않은 위원도 2 명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기존 선거구 획정 방식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느니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 의회는 지난 50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타협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NO 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주 의회가 위원 10 명 중 8 명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또한, 확정안의 최종적 승인은 주지사나 주 의회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주 의회는 위원회의 확정안을 두 번 거부했을 시 자체적으로 확정안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마저 얻게 됩니다.
- 이 개정안은 재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이 조작되는 관행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와 의회는 확정 과정에서 기존 선거구의 핵심 지역들과 이익 집단들을 함께 유지시키는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따른다면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획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임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 이 개정안은 위원회 소속 고위 직원을 임명하고 확정안을 승인하는데 있어 복잡한 투표 절차를 요구하고, 또 이를 통해 소수당에게 다수의 의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승인 절차에서 특정 위원들의 찬성표결을 요구합니다. 만약 표결 절차가 진정으로 공정했다면 (예를 들어 투표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적(籍)을 두지 않은 위원의 의사에 따라 그 결과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 두 주요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의 수가 같으므로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고, 또 이는 의회에게 자체적으로 확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현 체제가 형편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개정안은 문제를 더욱 악화할 뿐입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체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이 개혁은 위험하고 위조적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선거구 획정 절차를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만들고 또 더 나아가 이를

뉴욕주 헌법의 일부로 만들어 더욱 수정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선거구
획정 과정을 개선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주 의회는 2022 년에 있을
다음 선거구 획정 이전에 더 나은 계획을 고안해야 합니다.

찬성론: 주민투표안 1 번에 찬성하는 의견

[시민연합 \(Citizens Union\)](#)

반대론: 주민투표안 1 번에 반대하는 의견

[공동 목적 뉴욕\(Common Cause New York\)](#)

[뉴욕공익연구기관\(New York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선 코피, No to Fake 회원](#)

[선거구획정 개혁 단체 \(Redistricting Reform\)](#)

[뉴욕시 여성회 \(Women’s City Club\)](#)

주민투표안 2 번 | 뉴욕주 입법안 전자 전송 허용

이 주민투표안은 뉴욕주 헌법 제 3 조 14 항의 개정을 제시합니다. 이 안은 의회에서 표결이 있기 최소 3 일 전 모든 상정된 입법안의 최종본이 인쇄되어 의원들의 책상에 놓여져야 한다는 헌법적 명시사항이 전자 전송을 통해 이행되도록 합니다. 전자 전송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의원들은 전자로 전송된 입법안을 책상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의원들은 원하는 경우 입법안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입법안 파일을 수정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전자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이 개정안은 상정된 입법안이 의원들에게 명시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뉴욕주 헌법은 모든 입법안의 최종본이, 주지사가 이를 즉시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의회에서 표결이 있기 최소 3 일 전 인쇄되어 의원들의 책상에 놓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입법안을 전자 전송 방식으로 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YES 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이 개정안은 인쇄, 제지구매 및 재활용에 드는 상당한 비용을 절약하게 해줄 것입니다.
- 다른 주 의회 중 절반 이상은 이미 문서배송 전자화 및 제지 사용 절감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욕주도 이 동향에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NO 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이 개정안은 뉴욕주 경제의 주요 부분인 제지 원료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산시스템 오류가 생기거나 해킹이 일어났을 시 입법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찬성론: 주민투표안 2 번에 찬성하는 의견

[시머스 캠벨 \(Seamus Campbell\)](#)

반대론: 주민투표안 2 번에 반대하는 의견

제출자 없음

뉴욕주 2014 년 법, 제 56 장, 파트 B, 섹션 1 이 명시하는 2014 년 스마트 학교 채권법은 주 정부가 다음과 같은 교육 관련 목적으로 최대 20 억 달러(\$2,000,000,000)에 상당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교실 내 컴퓨터 기반 설비와 고속 인터넷을 갖추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 양질의 유아원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교실 제공하기; 이동형 교실을 영구적인 학습 공간으로 대체하기; 학교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기. **2014 년 스마트 학교 채권법에 찬성하십니까?**

이 안이 통과하면, 뉴욕주는 공립 및 비공립 학교에 학습용 기술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 억 달러(\$2,000,000,000)를 빌릴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자금은 전자 칠판,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태블릿 및 서버를 갖추고; 학교 및 지역사회를 위해 고속 광대역 또는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며; 유아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 및 개조하고; 이동형 교실을 대체할 교육 공간 마련하며; 학교 건물 및 교내에 첨단 보안 시설을 설치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투표안이 통과하면, 뉴욕주립대 총장을 포함한 검토위원회가 보조금 수혜 자격에 대한 지침을 발행할 것이며, 보조금을 신청하는 학교는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투자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YES 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채권을 발행하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날의 경제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채권을 발행하면 유아원 프로그램 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필요했던 이동식 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고 교내 첨단 보안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시급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NO 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뉴욕주는 이미 너무 많은 채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20 억 달러 상당의 채권발행은 한층 더 늘어난 채무를 초래할 것입니다.
- 주 정부가 채권 발행을 강행할 것이라면 최소한 도로, 대교, 수도 및 하수 시스템과 같은 오래된 기반시설을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 채권은 컴퓨터 설비와 같이 채무 상환이 끝나기 전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 아닌 차입기간 동안 그 가치를 유지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어야 합니다.

- 설비를 장만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 받더라도, 학군은 이미 빠듯한 예산 안에서 이를 운영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춘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는 부담을 져야만 합니다.

찬성론: 주민투표안 3 번에 찬성하는 의견

제출자 없음

반대론: 주민투표안 3 번에 반대하는 의견

제출자 없음